

기 부 금 명 세 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① 인적사항	① 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성 명	④ 주민등록번호
	⑤ 주 소	(전화번호 :)
	⑥ 사업장 소재지	(전화번호 :)

② 해당 연도 기부 명세										
⑦ 코드	⑧ 기부내용	기 부 처		⑪ 기부자			건수	기부 명세		
		⑨ 상호 (법인명)	⑩ 사업자 등록번호 등	관계 코드	성명	주민 등록번호		기부금액		공제제외 기부금
								⑫ 합계 (⑬+⑭)	⑬ 공제대상 기부금액	

③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									
기부자 구 분	총 계	공제대상 기부금						공제제외 기부금	
		특례기부금	정치자금 기부금	고향사랑 기부금	일반기부금 (종교단체 외)	일반기부금 (종교단체)	우리사주 조합 기부금	기부장려금 신청금액	기타
코 드		10	20	43	40	41	42	10, 40, 41	50
합 계									
본 인									
배우자									
직계비속									
직계존속									
형제자매									
그 외									

④ 기부금 조정 명세								
기부금 코드	기부 연도	⑯ 기부금액	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	⑱ 공제대상 금액 (⑯-⑰)	해당 연도 공제금액		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	
					필요경비	세액(소득) 공제	소멸금액	이월금액

⑤ 노동조합 회비 명세									
⑦ 코드	⑪ 기부자			⑲ 노동조합		⑳ 적정공시 노동조합 회비 납부액		㉑ 비적정공시 노동조합 회비 납부액	
	관계 코드	성명	주민 등록번호	명칭	사업자 등록번호 등	1월~9월 납부액 (공제대상)	10월~12월 납부액 (공제대상)	1월~9월 납부액 (공제대상)	10월~12월 납부 액 (공제제외)

작성방법

※ 기부금을 특별소득공제·특별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·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- ⑦ 코드란: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. 이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도 아래의 기부금 유형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.
 - 가. 특례기부금(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): 코드번호 "10"
 - 나. 정치자금기부금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에 따른 기부금): 코드번호 "20"
 - 다. 고항사랑기부금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58조에 따른 기부금): 코드번호 "43"
 - 라. 일반기부금[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(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,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)]: 코드번호 "40"
 - 마. 일반기부금(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): 코드번호 "41"
 - 바. 우리사주조합기부금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): 코드번호 "42"
 - 사.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·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(미지급분 기부금 포함): "공제제외 기타", 코드번호 "50"
- ⑧ 기부내용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"금전"으로,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"현물"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.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.
- ⑨ 상호(법인명)란: 상호·법인명·단체명·성명을 적습니다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다).
-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: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·고유번호를 적습니다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). 다만,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·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- ⑪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"2. 해당연도 기부명세"의 최상단에 적고, ⑨ 상호(법인명)란과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습니다. ⑫ 기부 명세 합계란에는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라 정당(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)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.
- ⑬ 기부자란: 관계코드(1. 거주자, 2. 배우자, 3. 직계비속, 4. 직계존속, 5. 형제자매, 6. 그 외), 성명,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.
- ⑭ 공제대상기부금액란: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·세액공제 대상에 해당(코드번호 "10", "20", "43", "40" ~ "42")하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.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액은 포함되나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은 공제대상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⑮ 기부장려금 신청금액란: 코드번호 "10", "41", "42" 중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.
- ⑯ 기타란: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·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. 이 경우 미지급분 기부금액의 경우도 기타란에 적습니다.
- "3.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"는 "2. 해당 연도 기부 명세"의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56호서식)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.
- 아래의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거나 손급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급에 산입합니다.
(2013년 이후 기부금부터)

구 분	특례기부금	정치자금 기부금	고항사랑 기부금	우리사주 조합기부금	일반기부금 (종교단체 외)	일반기부금 (종교단체)
코 드	10	20	43	42	40	41
이월공제가능기간	10년	-	-	-	10년	10년

- "4. 기부금 조정 명세" 작성 방법
 - 가.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"3.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"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(소멸금액)을 계산합니다.
 - 나.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.
 - 다.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, 기부연도, ⑮ 기부금액,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, ⑱ 공제대상금액 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.
 - 라.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에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(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).
 - 마. 정치자금기부금, 고항사랑기부금, 특례기부금, 우리사주조합기부금, 일반기부금 순서로 공제하고, 일반기부금에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.
 - 바. 2013.12.31.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우선하여 공제하며, 2014년 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.
 - 사. 이월기부금 공제 후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.
 - 아.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
- "5. 노동조합 회비 명세" 작성 방법
 - 가. ⑲ 노동조합란: 회비를 납부한 노동조합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·고유번호를 기재하며,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 - 나. ⑳ 적정공시 노동조합 회비 납부액란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 금액을 1월~9월 납부액과 10월~12월 납부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.
 - 다. ㉑ 비적정공시 노동조합 회비 납부액란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 금액을 1월~9월 납부액과 10월~12월 납부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.